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 검찰권 오남용 진상조사 및 피해회복 〉

■ 서왕진 · 한창민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1423호)

2025.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3
IV . 검토의견	6
1. 제정안의 입법취지 및 체계	6
2. 검찰권 오남용 관련 입법필요성	8
3. 주요 조문별 검토	13
4. 종합의견	55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서왕진 · 한창민 · 민형배의원 등 37인
2. 발 의 일: 2025. 7. 10.
3. 회 부 일: 2025. 7. 11.

II. 제안이유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음. 이는 단순히 한 권력자의 탄핵을 넘어, 헌법에 따라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사적인 권력 유지와 정치보복의 도구로 남용한 행위에 대해 헌법기관이 내린 사법적 단죄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이 ‘국민주권’에 있음을 재차 천명한 역사적 분기점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이 자행한 각종 폐해는 여전히 청산되지 않았고, 특히 윤석열이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시 자행한 검찰권 오남용으로 인해 관련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채 일상을 살아가고 있음.

윤석열을 정점으로 한 부패한 검찰 권력은 전직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 그리고 유력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무차별 수사와 기소, 수백건에 이르는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언론계 · 노동계 · 시민사회에 대한 전방위적 탄압까지 자행했음. 이러한 행위들은 과거 군사정권의 정치수사와 다를 바 없는 방식으로 권력이 검찰을 사유화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명백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수 많은 소송과 재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일부는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피해자들의 삶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훼손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검찰권 오남용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 피해 회복까지를 포괄할 수 있도록 본 법안을 발의 하고자 함. 이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사법적·정치적 폭력의 실체를 끝까지 밝히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도록 함. 또한 검찰권이 특정 세력의 도구로 남용되지 않는 엄정하고 실질적인 조치가 되어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올바르게 세우는데 이바지할 수 있음.

Ⅲ. 주요내용

가.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절 검찰권 오남용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여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혀 상응하는 책임을 지우고 그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여 공권력의 공정한 행사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재심을 포함하여 무죄가 확정된 사건 중 검찰권 오남용의 의혹이 있거나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권한의 자의적 오남용이 현저한 것으로 의혹이 제기된 사건, 범죄의 의혹이 상당함에도 수사 및 공소제기를 하지 않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사건 등을 포함하여 위원회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을 진상조사의 대상으로 함(안 제2조).

다. 이 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둠(안 제3조, 안 제5조).

라. 위원회가 진상조사 등 그 밖의 위원회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고 관련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와 사무처를 두도록 하고, 필요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제15조, 제18조).

마. 조사대상사건의 피고인, 피의자, 참고인 또는 사건관계인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위원회 진상조사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또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할 경우 법 시행일 1년 이내에 위원회에 진상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바. 위원회는 안 제20조에 의한 진상조사 신청이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중요한 사건으로서 진상조사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상조사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개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사. 위원회는 진상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 법의 진상조사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개인정보, 통신이용자 정보 등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출석 및 진술청취 등을 요구하거나 실지조사를 할 수 있음(안 제24조).

아. 위원회는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감정·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조사대상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음(안 제26조, 안 제30조).

자. 위원회는 최초의 진상조사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2년간 진상조사 활동을 하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안 제31조).

차.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었을 때, 조사 결과 또는 진상조사 불능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진상조사 신청인 및 조사 대상자·참고인 등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34조, 제35조)

카.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2회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활동이 최종 종료될 경우 6월 이내에 권고 사항 등이 포함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41조)

타. 국가는 검찰권 오남용자에 대하여 법적·정치적 조치 및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며, 규명된 진실에 따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아울러 위원회는 피해자의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음(안 제44조, 안 제46조, 안 제4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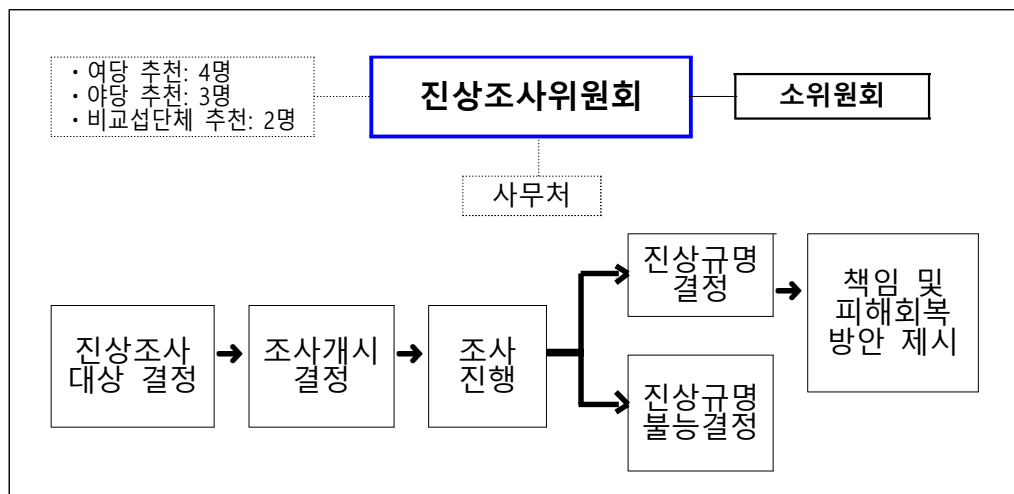
IV. 검토의견

1. 제정안의 입법취지 및 체계

제정안은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절 검찰권 오남용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피해자들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절 검찰권 오남용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여 윤석열의 검찰권 오남용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그 오남용에 책임있는 자들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지우고 그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여 공권력의 공정한 행사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상조사 제도(안) 개관>



제정안은 6개 장, 55개의 조문과 부칙 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정안의 조문 체계>

조문	내 용	조문	내 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진상조사의 대상
제3조	진상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독립성	제4조	확정판결과 진상조사의 관계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	소위원회의 구성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9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10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11조	위원의 겸직금지 등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3조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14조	의사의 공개
제15조	사무처의 설치	제16조	직원의 신분보장
제17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제18조	공무원의 파견 등
제19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1절 조사의 개시			
제20조	진상조사 신청 등	제21조	신청의 방식
제22조	각하결정	제23조	방문점검
제2절 조사의 진행			
제24조	진상조사 조사방법	제25조	동행명령 등
제26조	청문회의 실시	제27조	증인 출석 등의 요구
제28조	증인 출석 등의 의무	제29조	증인 등의 선서
제30조	검증	제31조	조사기간
제32조	징계·문책 사유의 시효 정지 등		
제3절 조사의 종결			
제33조	진상조사결정	제34조	진상조사불능결정
제35조	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제36조	진상조사결정의 처리
제4절 조사절차상 관계인에 대한 보호			
제37조	변호인의 진상조사 참여·조력	제38조	증인 등의 보호
제39조	위원 등의 보호	제40조	조사대상자의 보호
제41조	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제42조	국가기관의 권고사항 이행노력 의무 등
제43조	국가기관 등의 협조 의무		
제4장 피해자 피해회복을 위한 국가와 위원회의 조치			
제44조	국가의 의무	제45조	불이익 금지
제46조	피해 및 명예회복	제47조	특별사면·복권의 건의 등
제48조	검찰권의 오남용의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사람에 대한 조치		

제5장 보칙			
제49조	비밀준수 의무	제50조	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제51조	사무처의 존속기간		
제6장 벌칙			
제5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3조	벌칙
제54조	형의 감경 등	제55조	과태료
부 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2. 검찰권 오남용 관련 입법필요성

가. 검찰권의 오남용 대응수단

1) 검찰권 행사의 한계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 하고,¹⁾ 「검찰청법」 제4조제3항²⁾에서 검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 권한 남용을 금지하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에서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의 수사는 수사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³⁾ 이러한 수사권

1)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22다236781 판결

2)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②(생략)

③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사가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거나 경험칙이나 논리칙 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면 위법함.⁴⁾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소추재량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함.⁵⁾

2)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통제 수단

검사의 공소제기가 오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위법한 공소제기를 기각⁶⁾⁷⁾하고, 공소제기를 하지 아니한 검사의 처분에 대해서는 「검찰청법」⁸⁾에 따라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 및 검찰총장에게

3)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40907 판결

4) “수사의 개시에 앞서 이루어지는 조사활동과 이에 기초한 범죄의 혐의가 있는가 여부에 관한 판단, 즉 수사를 개시할 것인가 또는 조사활동을 종결할 것인가의 판단은 수사기관이 제반 상황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조사활동과 그에 따른 수사의 개시 여부에 관한 수사기관의 판단을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위하여는 형사소송법 등의 관련 법령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수사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거나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14932 판결)

5)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도14772 판결

6)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생략)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3. ~ 6. (생략)

7)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도14772 판결

8) 「검찰청법」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②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항고를 한 자[「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고등검찰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항고·재항고를 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하여 통제할 수 있음.⁹⁾

검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신문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위법하게 수사권을 남용하는 등¹⁰⁾ 공소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가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에는 재심사유에 해당함.¹¹⁾

검찰권 오남용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¹²⁾에 따라 국가배상을 청구하거나, 「민법」¹³⁾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¹⁴⁾ 검찰

④ ~ ⑦ (생략)

9) 「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 ①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② ~ ④ (생략)

제262조(심리와 결정) ① (생략)

②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1.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③ ~ ⑥ (생략)

10) 대법원 2024. 9. 19. 자 2024모179 결정

11)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 6. (생략)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

12)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13)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권을 오남용한 검사는 직권남용죄¹⁵⁾ 등으로 처벌할 수 있으며,¹⁶⁾
「검사징계법」¹⁷⁾에 따른 징계 및 탄핵의 대상이 됨.

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입법 필요성

제정안은 다음의 점에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① 기존 절차로는 검찰권의 오남용과 관련하여 신속한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 ② 피해 구제를 위하여 재심, 검찰 항고, 재정신청, 국가배상 등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절차에서도 검찰이 주체가 되거나, 주요 당사자가 되어 해당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피해자 등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 ③ 검찰권의 오남용은 그 특성상 전문적 지식과 조사권한이 없는 피해자가 밝히기 어려우며, 특히 이미 형사절차가 종료된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진상조사나 피해구제를 받기는 더욱 어렵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인정될 수 있음.

다만, 다음의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14)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40907 판결

15)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6) 대법원 2024. 9. 19. 자 2024모179 결정

17) 「검찰청법」

제2조(징계 사유)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검사를 징계한다.

1. 「검찰청법」 제43조를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37조(신분보장)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① 제정안에 따른 진상조사 대상인 검찰권 오남용 사건의 범위를 확정하기 어려워 검찰의 모든 수사·기소·불기소 처분이 검찰권 오남용으로 진상조사 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② 이로 인해 검찰권 오남용 사건 진상조사 대응으로 검찰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예상될 수 있는 점, ③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까지 진상조사 대상으로 할 경우 법관의 독립성 침해가 문제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유사 입법례 비교 >

구분	제정안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업무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절 검찰권 오남용 사건의 진상조사 및 피해회복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의 사건 원인 규명, 대응방안 수립, 피해자 지원대책 점검	10·29이태원참사의 피해자 구제 및 지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국가권력의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암매장 사건 등 조사
업무주체	진상조사위원회	특별조사위원회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	국회의 추천(9명) 후 대통령이 임명	국회의 추천(9명) 후 대통령이 임명	국무총리가 임명(9명)	국회의 추천(9명) 후 대통령이 임명
임기	2년 + 연장된 조사기간	활동기간 종료시까지	활동기간 종료시까지	2년 + 연장된 조사기간
조사기간	조사개시결정 후 2년 + 1년 연장가능	2022.6.10.까지	조사개시결정 후 1년 + 3개월 연장가능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 1년 2회 연장가능
특이사항	- 진정조사 신청에 따라 조사 개시 - 직권 조사 가능 - 업무 분담을 위한 소위원회 설치	업무 분담을 위한 소위원회 설치가능	업무 분담을 위한 소위원회 설치가능	- 진상규명 직권조사 - 진정규명 신청에 따라 조사 개시

	치가능			
사무기구	사무처장 1명 및 그 밖의 필요직원	사무처장 1명 및 그 밖의 필요직원	사무처장 1명 및 그 밖의 필요직원	사무처장 1명 및 그 밖의 필요직원
운영 기간	위원회 종료 후 3개월까지 존속	위원회 종료 후 3개월까지 존속	위원회 종료 후 3개월까지 존속	위원회 종료 후 3개월까지 존속
결과보고	조사종료 후 6개월 내에 국회·대통령 보고	조사종료 후 3개월 내에 국회·대통령 보고	조사종료 후 3개월 내에 국회·대통령 보고	조사종료 후 6개월 내에 국회·대통령 보고
국기기관 대상 권고 이행	권고사항 이행계획·조치결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	이행내역 및 불이행사유 매년 국회 보고	이행내역 및 불이행사유 매년 국회 보고	권고사항 이행계획·조치결과 국회 보고

3. 주요 조문별 검토

가. 진상조사 대상(안 제2조)

안 제2조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진상조사의 대상을 규정함.

제 정 안
제2조(진상조사의 대상) ① 제3조 규정에 의한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절 검찰권 오남용 사건에 관한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진상조사 대상 사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심을 포함한 법원의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 중 검찰권을 남용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 2.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권한의 자의적 오남용이 현저한 것으로 의혹이 제기된 사건 3. 범죄의 의혹이 상당함에도 검찰이 수사 및 공소제기를 하지 않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사건 4. 기타 검찰의 권한 오남용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원회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② 제1항 각 호의 사건은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임기를 개시한 2019. 7. 25.부터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2025. 4. 4.까지 수사개시된 사건들에 한정함

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건 중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은 수사나 재판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이는 제정안에 따른 진상조사 및 피해자 구제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

다만,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첫째, 제정안에 따른 진상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은 그 적용을 받는 사건을 검찰권을 남용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 “범죄의 의혹이 상당함에도” 수사 및 공소제기를 하지 않거나 지연시킨 사건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에 따른 진상조사 등의 대상의 기준이 “의혹”뿐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그 대상인지를 한정하기 어려움. 제정안에 따른 진상조사의 범위와 관련된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¹⁸⁾이라는 점에서 입법자가 직접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봄.

둘째, 안 제2조제1항제4호는 검찰의 권한 오남용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원회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을 진상조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

18)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작용에는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지만,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인 의회유보 원칙을 내포한다.”(법제기준과 실제, 국회사무처, 2024, 27쪽)

부터 제3호까지의 검찰권 오남용 의혹 사건 외에 어떠한 “권한 오남용”을 대상으로 하는지 한정하기 어려워 진상조사위원회가 진상조사 대상을 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점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함.

셋째, 안 제2조제3항은 진상조사 대상 선정시 수사나 재판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고려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도 진상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요청의 측면에서, 재판 중인 사건은 법관의 독립성 요청의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며, 절차적 측면에서도 중복 절차가 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함.

나. 진상조사위원회의 설치

안 제3조는 진상조사 대상 선정,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도록 규정함.

제 정 안
제3조(윤석열에 의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독립성) ① 이 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2조 규정에 따른 조사대상 선정 및 그에 따른 조사개시결정 2. 조사의 진행 3. 조사결과 진상규명결정 및 진상규명불능결정 4. 제3호의 진상규명결정 결과에 따른 책임 및 피해회복방안 제시 5.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③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정안의 진상조사위원회는 그 소속이 명시되지 않은 독립위원회로서 안 제3조제3항에서는 특히 위원회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명시하고 있음.

헌법상 명시적 근거를 갖지 않고, 또한 「정부조직법」에도 근거를 갖지 않은 채 개별 법률에 의해 독립적으로 설치·운영되는 기관으로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들 수 있음.¹⁹⁾ 양 기관 모두 해당 법률에서 특별한 소속을 밝히지 않으나, 전자는 합의제 행정기관 및 독립행정위원회로, 후자는 독립제 행정기관으로 설치되어 있음.

독립행정위원회는 i) 기존 행정조직의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나, 기존의 행정조직으로 관장하기 어려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에 필요할 수 있으나, ii) 행정기관을 과도하게 독립화시키는 것은 자칫 국가 행정권의 원자화로 각각 권한을 두고 정치적·법적 다

19)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① 이 법에서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①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1.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
2. 제2조제1호다목, 카목, 파목, 하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
② 수사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③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틈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행정기능의 효율성을 방해할 우려도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행정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성, 즉 전문성, 숙의의 필요성, 신규성·독자성, 계속성·상시성이 있을 것이 요구됨.²⁰⁾

한편, 행정위원회의 독립성이 강조될 경우 행정조직 원리의 핵심원리인 민주적 통제가능성과 책임성의 원리와 충돌할 우려가 있으므로, 진상조사위원회를 독립행정위원회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독립성의 요청과 민주적 통제가능성·책임성과의 관계에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²¹⁾

다. 확정판결과 진상조사의 관계(안 제4조)

안 제4조는 진상조사와 확정판결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4조(확정판결과 진상조사의 관계) 제2조제1항 각 호의 진상조사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한 조사대상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원의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사항인 경우 위원회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기속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정부조직법」

제5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이하 “행정위원회”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獨自性)이 있을 것
4. 업무가 계속성·상시성(常時性)이 있을 것

21) 윤성현, 앞의 글, 454-455쪽

1. 위원회의 의결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이 법에 의한 진상조사 결과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형사확정판결의 공소권 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이 변경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확정판결된 사건은 진상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되, 재심사유²²⁾가 있거나 진상조사 결과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공소권 남용에 대한 판단기초가 변경되어 확정판결에 대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진상조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만, 재심제도는 확정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이고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 요청은 미확정판결보다 상당히 크기 때문에 상소보다 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점과,²³⁾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의 전속적 판단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단과 다른 판단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상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법절차의 안정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함.

22)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

23) 현재 2018. 12. 27. 2017헌바472, 판례집 30-2, 729, 736.

라. 위원회의 구성(안 제2장 제5조~제19조)

안 제2장은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3명,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많은 순서의 정당 2곳이 추천하는 각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공인된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3.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4. 그 밖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진상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성과 경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기한 내에 교섭단체 또는 비교섭단체가 위원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추천하지 않은 인원을 뺀 나머지 위원들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추천된 위원이 6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위원 중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많은 정당이 추천하는 1명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⑥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제6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진상조사 등 그 밖의 위원회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요구하면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그 소관사무(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24조에 따라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 법의 진상조사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가재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8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조사기간이 만료되거나 제31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도 연장된 조사기간까지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임기 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

③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9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재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면직한다.

제10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자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1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3. 그 밖에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위원회 진상조사사건의 검찰권 오남용자 또는 피해자인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진상조사사건의 검찰권 오남용자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진상조사사건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진상조사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진상조사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진상조사사건의 신청인 또는 조사대상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의사의 공개)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사무처의 설치) ① 위원회의 진상조사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그 밖의 직원을 두며,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급 이하의 공무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직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회 직원은 형의 확정,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은 위원회가 활동을 존속하는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공무원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진다.

제17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권한, 심의절차,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그 밖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공무원의 파견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지 않는 한 신속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안 제5조)

제정안은 진상조사위원회를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상임위원 1명 포함),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3명(상임위원 1명 포함),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많은 순서의 정당 2곳이 추천하는 각 1명(상임위원 1명 포함)으로 구성하도록 함.

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할 때 국회 교섭단체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은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상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안 제5조제3항은 요청받은 기한 내에 교섭단체 또는 비교섭단체가 위원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하지 않은 인원을 뺀 나머지 위원들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위원 추천권 미행사로 인해 위원회 구성·운영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나, 전문성과 숙의를 위해 행정위원회를 두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위원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정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2) 위원 임기(안 제8조)

제정안은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하도록 하며, 조사기간 연장 시 위원 임기도 연장되도록 하고 있음. 위원 임기는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다만, 조사기간 연장 시 위원 임기도 연장되도록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단기의 조사기간 연장에 따라 위원의 인적 구성 단절 없이 조사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제정안에 따라 임기의 절반인 1년까지 조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점에서 별도의 재임명 절차 없이 위원 임기를 연장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함.

3) 위원 신분보장(안 제9조)

제정안은 위원이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를 면직 사유로 규정

하고, 전체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면직하도록 규정함. 위원의 신분보장은 그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에서,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면직사유와 절차도 그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임.

4) 위원 결격사유(안 제10조)

제정안은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²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정당의 당원 및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당연퇴직하

24)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도록 규정함.

정부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는 그 도입의 필요성과 공무담임권 제한 간 비교·균형을 고려하여 규정할 사항임.²⁵⁾

5) 위원의 겸직금지(안 제11조)

제정안은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겸직금지를 규정하면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직, 공무원직 외에 기타 겸직금지 대상은 위원회규칙에 위임하고 있음.

국민권익위원회²⁶⁾, 원자력안전위원회²⁷⁾, 방송통신위원회 등 다른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설치 법률에서도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단체의 임직원, 위원의 영리목적 업무 종사 등을 금지하면서 영리목적 업무의 한계 등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한 사례가 있음.

25) 「행정기본법」

제16조(결격사유) ② 결격사유를 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규정의 필요성이 분명한 것
2. 필요한 항목만 최소한으로 규정할 것
3. 대상이 되는 자격, 신분, 영업 또는 사업 등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4. 유사한 다른 제도와 균형을 이룰 것

2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행정기관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위원의 겸직금지) 법 제1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교육·연구기관 및 학술단체를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3.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임원이나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나 승인을 요하는 법인 또는 단체

27)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겸직금지 등) ① 상임위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기타 검직금지 대상을 위원회규칙에 포괄위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검직금지 사항의 대강이 무엇인지를 법률에서 명확히 표현하고, 위임형식²⁸⁾도 위원회규칙이 아닌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음.

6) 위원의 제척 등(안 제12조)

제정안은 위원이 검찰권 오남용자 또는 피해자인 때 등에는 진상조사사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기피되거나 회피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위원회 의사결정에 있어 이해충돌 방지와 독립적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다만, 진상조사 대상 사건은 형사사건으로서 이에 관계되어 진상조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제척될 필요가 있는 자의 범위에는 안 제12조제1항 각 호의 검찰권 오남용자, 피해자, 수사·재판 관여자, 증언·감정인, 대리인 외에도 해당 사건의 고발인이나 관련 범죄사건의 범죄피해자, 참고인 등의 사건관계인 등 제정안에서 미처 예정하지 않은 자도 해당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제척 사유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28) “행정규칙은 법규명령과 같은 엄격한 제정 및 개정절차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위임할 때에는 법규명령에 위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법령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헌법재판소 2014. 7. 24. 선고 2013헌바183 결정례)

7) 사무기구(안 제15조)

제정안은 진상조사위원회의 사무를 실질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사무기구를 두려는 것으로, 집행조직인 사무기구의 지위 및 정원 확보를 위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임.

다만, 제정안은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규칙²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원칙적으로 정부조직법 제상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설치에 대통령령(직제)으로 정하여야 하며, 행정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사무처의 조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³⁰⁾³¹⁾

마. 진상조사의 개시(안 제3장제1절 제20조~제23조)

안 제3장제1절에서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개시에 필요한 신청 및 각하·조사개시결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29) 제정안과 유사하게 감사원의 경우 「감사원법」 제17조제2항에서 정원을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감사원은 헌법상 기구라는 특수성이 있음.

30)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③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차장·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실장·국장 및 과장의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단장·부장·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실장·국장 및 과장의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위원회의 사무기구 등) ① 행정위원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사무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 사무기구의 구성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다른 합의제 중앙행정기관들도 모두 조직과 정원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독립성이 강조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원도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규정하고 있음.

제20조(진상조사 신청 등) ① 제2조 조사대상사건의 피고인, 피의자, 참고인 또는 사건관계인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위원회 진상조사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위원회에 진상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 이외의 사람은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 위원회에 진상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관계인 및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의 범위, 제2항 규정에 의한 청원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신청의 방식) ① 제20조제1항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신청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각하결정) ① 위원회는 제20조에 의한 진상조사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

1. 진상조사 신청이 위원회의 진상조사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2. 진상조사 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허위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진상조사 신청 내용이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내용인 경우

4. 위원회가 각하한 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신청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을 한 후에도 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한다.

제23조(진상조사 조사개시) ① 위원회는 제20조에 의한 진상조사 신청이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중요한 사건으로서 진상조사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상조사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개시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 제2항의 조사개시결정 이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할 수 있다.

제정안은 진상조사 개시에 필요한 절차적 사항을 정한 것으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³²⁾ 등 입법례와 유사함.

다만, 안 제20조는 진상조사 신청자의 범위를 검찰권 오남용의 직접적인 피해자 외에도 참고인, 사건관계인 뿐만 아니라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은 청원인까지 포함하고 있음.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안 제2조에 따른 조사대상의 범위가 불명확한 것에 더하

32)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24조(진상규명조사) 조사위원회는 직권으로 10·29이태원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수행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신청으로 제6조제2항의 업무와 관련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25조(조사신청) ① 제24조에 따른 신청(이하 “조사신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신청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② 조사위원회는 신청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조사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각하결정)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

1. 조사신청이 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조사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조사위원회가 각하한 조사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조사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조사신청에서 제출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 후에도 조사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신청을 각하한다.

제27조(조사의 개시) ① 조사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조사개시 결정을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결정 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개시 결정을 위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여, 안 제20조에서 진상조사 신청인의 범위를 사실상 제한 없이 열어둠으로 인해 진상조사 신청과 그 대상이 무분별하게 확대될 위험이 있음. 이로 인해 진상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고, 조사대상 선정의 객관성·공정성 측면에서도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 점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바. 진상조사의 진행(안 제3장제2절 제24조~제32조)

안 제3장제2절에서는 진상조사 조사방법, 진상조사를 위한 동행명령, 증인 출석 등의 요구, 조사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24조(진상조사 조사방법) ① 위원회는 진상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대검찰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 법의 진상조사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의 영치 4. 관계 기관·시설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대법원 등 관계 기관에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

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은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규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 2, 제83조의 3 규정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진상조사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장소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서 관련 자료나 물건 또는 기관·시설 및 단체(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 또는 직원이 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진술을 청취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47조 내지 제149조 및 제244조의3을 준용한다.

⑧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등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⑨ 제2항제3호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2조, 제129조 내지 제131조 및 제133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기관등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⑩ 위원회는 제9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을 검토한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⑪ 위원회로부터 실지조사 또는 진상조사와 관련하여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 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의 소명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⑫ 제1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등의 장은 위원회에 대해 해당 자료 및 물건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 및 물건을 열람한 위원회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동행명령 등) ① 위원회는 제2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에 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④ 동행명령장은 위원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⑤ 진상조사대상자가 현직 검사인 경우에는 소속 관서장은 위원회 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⑥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위원회 직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

제26조(청문회의 실시)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감정·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청문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청문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증인 출석 등의 요구) ① 위원회가 청문회와 관련하여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장이 해당하는 사람이나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구서에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인·감정인·참고인이 출석할 일시와 장소 및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증인 또는 참고인의 경우 신문할 요지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일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일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28조(증인 출석 등의 의무) ① 위원회로부터 제27조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로부터 제27조제1항에 따라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준용한다.

③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제24조제9항을 준용한다.

④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제24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증인 등의 선서) ① 위원장은 청문회의 증인·감정인에게 증언·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 또는 허위감정의 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인으로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57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감정인이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70조를 준용한다.

제30조(검증) ① 위원회는 청문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조사대상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증을 하는 경우 위원장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관리자(국가기관 등의 경우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검증 실시통보서를 발부한다. 이 경우 검증실시통보서는 검증일 3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에는 검증을 실시할 위원과 검증의 목적, 대상, 방법,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증에 대해서는 제24조제9항을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조사기간) ① 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최초의 진상조사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2년간 진상조사활동을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진상조사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기간 만료 이전에도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서 조사기간을 만료할 수 있다.

제32조(징계·문책 사유의 시효 정지 등) ① 위원회가 조사 중인 진상조사 사건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위원회는 진상조사사건의 조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법령 또는 소속 단체 등이 정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의 시효기간이 끝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2항에 따른 조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제33조, 제36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징계 또는 문책 요구를 할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1) 진상조사 조사방법(안 제24조)

안 제24조에서는 진상조사를 위해 위원회가 대검찰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사방법을 구체화하고 있음.

다만, 수사기관 등에 대한 수사기록 및 증거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관련 기록·자료를 제출할 경우 재판·수사 절차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점, 수사 자료 등은 개인정보 등 민감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동행명령(안 제25조)

검찰권 오남용의 진상조사를 위해 당사자 등에게 출석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동행명령을 하며, 이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안 제55조제2항제2호)를 부과하는 것은 조사

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필요할 것으로 인정됨.

다만, 법관 아닌 자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도록 하여 사실상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제한이 과도한 것이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참고인에 대한 동행명령제도와 관련, 사실상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여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다고 결정한 바 있음.³³⁾

3) 조사기간(안 제31조)

제정안은 위원회 조사기간을 조사개시 결정 이후 2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안 제2조에 따른 검찰권 오남용 조사대상의 규모, 안 제20조에 따른 조사신청의 예상 규모 등,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간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징계·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등(안 제32조)

안 제32조는 위원회가 조사 중인 진상조사사건 징계 또는 문책 절차의 진행을 중단하도록 하여 진상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징계 또는 문책 사유의 시효정지를 위한 것임.

다만, 범죄 수사와 공소제기·유지 및 형벌권 집행의 업무 등을

33) 헌법재판소는 특별검사가 참고인에게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위 동행명령을 거부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부분은 영장주의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2조제3항에 위반하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헌법재판소 2008. 1. 10. 선고, 2007헌마1468 결정례)

통해 준사법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검사에 대해서는 엄격한 신분보장이 요청됨과 동시에 고도의 윤리성과 책임이 요구됨에 따라,³⁴⁾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규정³⁵⁾과 별도로 「검사징계법」³⁶⁾에서 징계사유, 절차 및 시효 등에 대해 규율하면서, 징계의 심의절차를 탄핵과 공소제가 있는 경우에만 정지하도록 하고 있는 점과 명백한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등에는 징계심의를 진행할 수

34)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9헌바282 결정례

35) 「국가공무원법」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 또는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위하여 감사원 또는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수사 자료를 징계 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감사원 또는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개정 2021. 6. 8.>

1. 징계 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징계 등 사유가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3. 그 밖의 징계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②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83조제3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③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過多)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있다.

36) 「검사징계법」

제24조(징계심의의 정지) 징계 사유에 관하여 탄핵의 소추 또는 공소의 제기가 있을 때에는 그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심의를 정지한다. 다만,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로서 징계 사유에 관하여 명백한 증거자료가 있거나, 징계혐의자의 심신상실(心神喪失)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징계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25조(징계등 사유의 시효) ① 징계등은 징계등의 사유가 있는 날부터 3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같은 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하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제24조 본문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24조에 따른 사건이 완결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③ 징계등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에 따른 징계등 사유의 시효 정지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진상조사 개시 통지 시 징계 또는 문책 절차의 진행 중단 여부 및 그 예외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바. 조사의 종결(안 제3장제3절 제33조~제36조)

안 제3장제3절에서는 진상조사 종료에 따른 결정 및 처리 등을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33조(진상조사결정)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어 진상조사가 된 경우 진상조사 조사결과를 의결로써 결정한다.
제34조(진상조사불능결정) 위원회는 진상조사 조사결과 진실을 밝히지 못하거나, 밝힐 수 없는 경우 진상조사 불능임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35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① 위원회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각하 결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결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진상조사 결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진상조사불능결정 등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진상조사 신청인과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자·참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진상조사 신청인, 조사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서 통지대상자에게 이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진상조사결정의 처리) 위원회가 진상조사결정을 한 때에는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수사의뢰, 소속기관장에 대한 징계요구, 국가에 대한 피해자 피해회복방안을 권고할 수 있다.

안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는 진상조사 개시에 필요한 절차적 사항을 정한 것으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³⁷⁾ 등 입법례와 유사함.

다만, 안 제36조에서는 위원회가 진상조사결정을 한 때에는 조사대상자에 대한 수사의뢰, 소속기관장에 대한 징계요구, 국가에 대한 피해자 피해회복방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진상조사 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안 제4장(제44조

37)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진상규명결정)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어 진상규명이 된 경우 진상규명 조사결과를 의결로써 결정한다.

제32조(진상규명불능결정) 위원회는 진상규명 조사 결과 진실을 밝히지 못하거나 밝힐 수 없는 경우 진상규명 불능임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33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① 위원회는 제25조에 따른 각하결정, 제26조에 따른 조사개시결정, 제31조에 따른 진상규명결정, 제32조에 따른 진상규명불능결정, 제44조에 따른 고발 또는 수사요청 등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제23조에 따른 진상규명 신청인과 그 신청사건 관련 조사대상자나 참고인 중 위원회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결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통지대상자에게 이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국가안전보장, 국민화해와 민주발전을 위하여 결정내용을 비공개할 수 있다.

부터 제48조까지)에서 피해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안 제41조제4항 각 호에서도 피해 회복 등에 필요한 조치를 보고서에 포함할 권고사항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최근 검사의 징계청구권자에 검찰사무 최고감독자인 법무부장관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검사징계법」이 개정된 점³⁸⁾ 등을 고려하여 규정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사. 조사절차상 관계인에 대한 보호(안 제3장제4절 제37조~제43조)

안 제3장제4절에서는 변호사 참여, 증인 보호 등 진상조사 절차과정에서의 관계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37조(변호인의 진상조사 참여·조력) ①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진상조사대상자에 대한 진상조사에 참여한 변호사인 변호인이 진상조사대상자의 옆자리 등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진상조사대상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상담을 보장해야 하며, 법적인 조언·상담을 위한 변호인의 메모를 허용해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변호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진상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가 아닌 단순 면담 등이라는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면담 등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38) 법률 제20987호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2025. 6. 10. 공포·시행)로 검사들이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일할 수 있게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도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심의를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의 잘못이 의심될 때는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검찰관에게 조사하게 하며, 법무부장관이 징계심의를 청구를 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였음.

제38조(증인 등의 보호) ① 증인은 청문회에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하여 법률상 권리에 관하여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변호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증인·감정인·참고인은 청문회에서 한 증언·감정·진술로 인하여 이 법에서 정한 처벌 외에 다른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제39조(위원 등의 보호) ①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위원·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위원·직원에게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폭행 또는 협박이나 위계로써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증언·감정·진술 또는 자료·물건의 제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진상조사사건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는 진상조사사건의 참고인이나 증인·감정인의 보호, 관련된 자료의 확보 또는 인멸의 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진상조사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상조사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고, 사면 대상으로 건의할 수 있다. 그 지원 또는 보상의 내용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조사대상자의 보호) ① 누구든지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의 신원 또는 조사내용을 신문·잡지·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조사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①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2회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활동이 최종 종료될 경우 위원회는 6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 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조사대상자의 행위를 조사함에 있어서 제24조의 조사대상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진술할 자는 조사보고서의 작성근거가 되는 증거자료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보고서 및 제2항의 종합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진상조사사건 피해자, 희생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2. 조사 결과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진상조사사건과 그 피해자, 희생자에 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3. 진상조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4.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항

⑤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때에는 해당 보고서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국가기관의 권고사항 이행노력 의무 등) ① 제41조제4항에 따른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이하 “소관 국가기관”이라 한다)은 해당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소관 국가기관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관리한다.

③ 소관 국가기관의 장은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보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고서에 포함된 소관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권고사항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소관 국가기관의 장은 권고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계획, 조치결과 및 미 이행 사유의 제출·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①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은 적극 협조하고 진상조사에 필요한 편의 제공 의무를 진다.

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게 위임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진상조사 관련 국가기관은 자체 진상조사를 위한 위원회 등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안 제37조부터 제43조까지는 진상조사 절차에서의 관계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39) 등 입법례와 유사함.

39)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34조(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①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2회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활동이 최종 종료될 경우 위원회는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 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조사대상자의 행위를 조사할 때 제27조의 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진술할 자는 조사보고서의 작성근거가 되는 증거자료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종합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진상규명사건 피해자 및 희생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2. 조사 결과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진상규명사건과 그 피해자 및 희생자에 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3. 진상규명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4.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진상규명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법적·정치적 화해조치에 관한 사항
6. 국민화해와 민주발전을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7. 역사의식의 함양을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8.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의 장은 종합보고서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권고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국민화해와 민주발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 보고 등에 관한 사항(안 제41조제1항 · 제2항 · 제4항 · 제5항), 국가기관의 권고사항 이행노력 의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42조), 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안 제43조)는 제3장제4절(조사절차상 관계인에 대한 보호)의 내용으로 정할 사항이 아니므로, 법규정 체계를 고려해 각각 제3장제3절(조사의 종결), 제5장(보칙)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 피해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안 제4장 제44조~제48조)

안 제4장에서는 피해자 피해회복을 위한 국가의 의무, 피해 및 명예회복 조치, 특별사면 · 복권 건의, 검찰권 오남용을 자인한 사람에

-
- ⑦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여 조사내용을 공표해서는 아니 된다.
- 제35조(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①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은 적극 협조하고 진상규명에 필요한 편의제공 의무를 진다.
- ② 외교부 · 법무부 · 국방부 · 행정안전부 · 국가정보원 등 진상규명 관련 국가기관등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체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 등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 제37조(조사대상자의 보호) ① 누구든지 제3조에 따른 진상규명 범위에 있어 행정기관 · 군대 · 사법부 · 조직 · 단체 등의 특정한 직위에 재직한 사실만으로 그 재직자가 같은 조와 관련되는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신문 · 잡지 · 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여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누구든지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전에 신문 · 잡지 · 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그 밖의 출판물을 통하여 조사대상자 및 그의 가해행위와 관련한 위원회의 조사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사생활 및 명예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2조(증인 등의 보호) ① 증인은 청문회에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하여 법률상 권리에 관하여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변호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증인 · 참고인이 방송이나 사진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를 들어 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녹음 · 녹화 또는 방송이나 사진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할 수 있다.
- ③ 증인 · 감정인 · 참고인은 청문회에서 한 증언 · 감정 · 진술로 인하여 이 법에서 정한 처벌 외에 다른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 제48조(가해자를 위한 사면 등) ① 진상규명의 과정에서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스스로 인정함으로써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그 인정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가해자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처벌하지 않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 기관에게 건의할 수 있고,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된 경우 대통령에게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다.
- ② 관계 국가기관은 위원회의 결정 및 건의를 존중하여야 한다.

대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44조(국가의 의무) 국가는 진상조사사건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검찰권 오남용자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정치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같은 가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5조(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의하여 규명된 사실을 이유로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46조(피해 및 명예회복) ①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1항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7조(피해자를 위한 특별사면·복권의 건의 등) ① 위원회는 대통령에게 진실이 은폐되거나 왜곡됨으로써 유죄판결을 받은 자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에 대해서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으며, 관계 국가기관은 위원회의 결정 및 건의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검찰총장에게 진실이 은폐되거나 왜곡되어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취소조치를 할 것을 건의할 수 있으며, 검찰총장은 위원회의 결정 및 건의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48조(검찰권의 오남용의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사람에 대한 조치) ① 진상조사의 과정에서 진상조사대상 사건에 관하여 검찰권의 오남용의 사실을 스스로 인정함으로써 진상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그 인정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사람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처벌하지 않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 기관에게 건의할 수 있고,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된 경우 대통령에게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다.

② 관계 국가기관은 위원회의 결정 및 건의를 존중하여야 한다.

안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는 진상조사와 관련한 절차적·부수적

사항으로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⁴⁰⁾ 등 입법례와 유사함.

다만,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함.

첫째, 안 제47조제1항과 제48조에서는 위원회가 검찰권 오남용 피해자와 검찰권 오남용을 자인한 사람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나, 특별사면과 복권은 헌법⁴¹⁾에 따른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점과 대통령의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한은 사법부의 작용에 대한 본질적인 관여·침해 또는 법치국가적 절차의 의미를 손상시킨다는 문제⁴²⁾가 있는 점에서 보충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음.

둘째, 안 제47조제2항은 위원회가 검찰총장에게 피고인에 대해 공소취소조치를 하도록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총장은 그 건의를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공소권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한 것이나, 기소편의주의에 따른 검사의 기소재량이 검찰권의 오남용의 원인 중 하나인 점을 고려하면,

40)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46조(피해 및 명예회복)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7조(희생자를 위한 특별사면·복권의 건의) 위원회는 진실이 은폐되거나 왜곡됨으로써 유죄판결을 받은 자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으며, 관계 국가기관은 위원회의 결정 및 건의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48조(가해자를 위한 사면 등) ① 진상규명의 과정에서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스스로 인정함으로써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그 인정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가해자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처벌하지 않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 기관에게 건의할 수 있고,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된 경우 대통령에게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다.

② 관계 국가기관은 위원회의 결정 및 건의를 존중하여야 한다.

41) 「대한민국헌법」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42) 장영수, 국가조직론, 홍문사, 2005, 322쪽

법원의 무죄 판결이나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한 공소기각 결정⁴³⁾이 아닌 검사의 전단적인 공소취소권 행사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가 본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셋째, 안 제48조에서는 진상조사 과정에서 검찰권의 오남용 사실을 자인한 사람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처벌하지 않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 기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기관은 그 건의를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검찰권 오남용자가 스스로 그 사실을 밝힘으로써 진상조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나, 형사처벌 여부 및 그 처단형은 「형법」⁴⁴⁾ 등 형사관계법령에 따라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며, 법원이 위원회의 건의를 존중하도록 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성 제한이 우려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3)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생략)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3. ~ 6. (생략)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① 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범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44)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제52조(자수, 자복) 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차. 보칙(안 제5장 제49조~제51조)

제정안 제5장은 진상조사와 관련한 절차적·부수적 사항으로서, 위원·직원의 비밀준수 의무, 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사무처 존속기간을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49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위원회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자,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위원 또는 직원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공개한 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1조(사무처의 존속기간) 사무처는 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종료(제41조제2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작성·보고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후 3개월간 존속한다.

안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는 진상조사와 관련한 절차적·부수적 사항으로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⁴⁵⁾ 등 입법례와 유사함.

45)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45조(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위원 또는 직원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조사위원회가 공개한 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9조(사무처의 존속기간) 사무처는 조사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 활동종료 후 3개월간 존속한다.

제73조(비밀준수 의무) 조사위원회·심의위원회 또는 추모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직원 또는 위원·직원이었던 자, 자문기구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다만, 안 제51조에서는 사무처를 활동 종료 후 3개월간 존속하도록 하면서, 사무처 활동 종료 시기를 종합보고서 작성·보고 시에는 그 종료 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한시적 조직인 위원회 사무기구의 존속기간을 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일정 기간으로 규정하는 취지는 제정안에서 언급한 보고서 등의 작성·보고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사무처 존속기간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카. 벌칙(안 제6장 제40조~제43조)

안 제6장은 벌칙 적용상 공무원 의제, 자료제출 불응, 위원·직원 업무수행 방해 등에 대한 처벌, 거짓 증언자 자백 감경 규정 및 과태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5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5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이 법의 진상조사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상급자로서 그 불응을 지시한 사람
2.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위원·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람

자, 조사위원회등의 위임·위탁 등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조사위원회등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원·직원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

4. 청문회에서 선서하고 거짓으로 증언하거나 감정한 증인 또는 감정인

②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의 명예를 해할 목적 또는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진상조사 신청을 허위로 한 자

2.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표함으로써 사람 또는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자

3.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와 관련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증인

5.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서 선서 또는 감정을 거부한 감정인

6.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청문회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

③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등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형의 감경 등)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거짓의 증언 또는 감정을 하고 그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백은 위원회에서 진상조사사건에 대한 결정을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제5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위원회의 진상조사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의 진술(진술서 제출을 포함한다)을 한 참고인이나 위원회가 요구한 자료 또는 물건을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2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회에 거짓으로 답변한 자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24조제10항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24조제6항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5조의 동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진상조사사건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자

4. 제45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불이익을 준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한다.

다만, 제정안의 벌칙 규정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함.

첫째, 안 제52조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데, i) 공무와 관련되지 않은 사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형법」 등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해당 업무와 관련한 경우로 명확히 하고, ii) 업무의 공공성 정도, 업무의 성질, 위원의 업무 관여 및 책임 정도를 고려하여 적용대상 벌칙 범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⁴⁶⁾ iii) 조문 체계상 보칙(안 제5장)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46)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는 경우 업무의 공공성 정도, 수탁업무의 성질, 임직원의 업무의 관여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용 벌칙의 범위를 결정한다. 입법례는 ① 벌칙 적용을 .형법.상 뇌물에 관한 죄(「형법」 중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로 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② 공무상 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를 포함하거나, ③ 「형법」.상 모든 공무원 관련 범죄(「형법」 제2편제7장)와 다른 법률에 따른 벌칙까지 확대하는 경우도 있다.”(법제기준과 실제, 국회사무처, 2024, 748쪽)

둘째, 안 제53조제1항제1호에서는 수사기록 등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행정형벌은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의무행 확보 방법이 없을 때 최종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점⁴⁷⁾을 고려할 때, 행정기관의 자료 불응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함.⁴⁸⁾

셋째, 안 제5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 증언 및 감정을 거부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증언 등의 거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⁴⁹⁾에서와 같이 형사처벌

47) 법제기준과 실제, 2024 개정증보판, 국회사무처, 753쪽

48) 공공기관의 자료요구 거부에 대한 과태료 처벌을 규정한 입법례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이 있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91조(과태료) ① 제62조의2제4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출석, 진술서·자료의 제출, 사실·정보의 조회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한 취업제한기관의 장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에 따른 업무수행을 방해·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2조의2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공공기관의 장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제24조제1항 또는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 방문조사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실지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제3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진술서 제출요구 또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 등의 제출요구 및 사실 조회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 등을 제출한 자

② 제5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징수한다.

4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는 입법례도 있으나, 일반적 소송절차에서 법정에서의 증언 거부
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점,⁵⁰⁾ 국회나 법원과 달리 행정기관의
성격을 갖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증언 거부행위를 형사처벌하여야 하
는 공익적 요청이 증인 등의 진술을 거부할 권리의 제한 정도보다
큰지 비교형량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자. 부칙(제1조·제2조)

안 부칙에서는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일(안 부칙 제1조), 위원
임기개시 적용례(안 부칙 제2조)를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위 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의 규칙의 제정, 위 원회의 설립준비는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제2조(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들의 임기 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본다.

1) 시행일(안 부칙 제1조)

부칙 제1조는 제정안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되, 위원회 설립 준비 등은 이 법 시행 전에도 할 수 있도록 하려

50) 「형사소송법」

제161조(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①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81조(증언거부에 대한 제재) 증언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재판이 확정된 뒤에 증인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제311조제1항,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는 것으로, 이는 위원회 구성 및 사무처 설치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2) 위원의 임기 개시일(안 부칙 제2조)

부칙 제2조는 위원의 임기를 제정안의 시행일부터 개시하도록 함으로써, 위원의 임기 개시일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보임.

4. 종합의견

검찰권 오남용으로 형사절차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검찰권의 오남용을 밝히고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그 특성상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검찰권 오남용 진상조사와 이를 위해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제정안의 입법취지는 인정될 수 있음.

다만,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검찰권 오남용의 진상을 조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형사사법제도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할 때, 현행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가 최대한 구제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는 한편, 국민의 법 감정, 정책적 필요성, 형사정책적 고려와 함께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의 의견까지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후, 궁극적으로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문 의 처
02)6788-5056